

제435회 국회 (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5월19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8)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9)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1)
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1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1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1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1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5)
1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1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1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1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2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2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2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25.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26.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2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2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9.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30.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3)
3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1)
3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1)
3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3)

상정된 안건

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4
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4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4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4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8) 4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9) 4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1) 4
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4
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4
1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4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4
1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5
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5

1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5
1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5)	5
1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5
1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5
1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5
1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5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5
2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5
2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5
2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5
2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5
25.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5
26.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5
2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5
2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5
29.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5
30.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3)	5
3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1)	5
3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1)	5
3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5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3)	5

(14시07분 개의)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소위원장으로서 간단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전반기 국회 우리 소위원회의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법률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해 주신 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기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 미처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이 있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여야 위원님들의 심도 높은 논의와 결단 덕분에 미국의 상호관세, 중동 전쟁 등으로 야기된 고유가, 고물가, 산업경쟁력 위기 등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입법적 지원을 이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위원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애써 주신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등 정부 관계자 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을 비롯한 국회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의사일정 제30항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31항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오늘 상정되어 심사 예정인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9항까지의 법률안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원장님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오늘 자로 우리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되어 의사일정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 및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을 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과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건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
1.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2.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7)
 3.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8)
 4.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9)
 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8)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9)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631)
 8.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1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1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246)
1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14.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9)
15.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55)
1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1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1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1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4)
21.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3)
22. **주얼리산업진흥법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2)
2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6)
2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25.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26.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27.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02)
28.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29.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30.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3)
31.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1)
3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1)
33.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55)
3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53)

(14시10분)

○소위원장 박성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4항까지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 심사자료 1권의 1쪽입니다.

1항,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개정안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국무총리가 위촉하며 지식재산처장을 위원회 간사로 두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제도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유사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관련 총괄·조정 부처로서 지식재산처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문대비표 3쪽, 4쪽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분만 더 오시면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3건에 대하여 한번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5쪽입니다.

먼저 특허법 개정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고의가 아닌 경우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 또는 보전기간의 만료일 중 늦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특허료 미납·미보전으로 인해 권리 소멸로 간주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허권의 회복요건을 완화하고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액을 인상하려는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 및 국제적 규범과의 통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요국은 수수료를 정액으로 정한 점 등을 고려해서 총리령에서 정하는 정액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또 현행 81조의3제3항에서는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에 요건 없이 3개월 이내에 특허료의 2배를 납부해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회복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고의가 아닌 한 1년 이내에 특허권 회복이 가능하게 되어 현행법의 요건 없이 3개월 이내에 특허권 회복절차를 규정하는 실익이 없어지게 되므로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유사 취지의 실용신안법 개정안은 준용하는 특허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실용신안법은 실용신안등록 및 등록료에 관해서 특허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개정 없이 실용신안권 회복제도에도 요건 완화 효과가 적용됩니다.

다음,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특허법 개정안과 취지 및 조문 구조가 동일한 내용입니다.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서 특허법 개정안의 심사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안 84조제7항에서는 회복 신청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통상부령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법과의 통일성을 고려해서 총리령으로 하는 방안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9쪽입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를 괄호로 해서 ‘(고의로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명시하였고 개정안에 ‘특허료의 3배’로 되어 있는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 삭제된 내용은 개정안이 특허권 회복 절차를 보다 완화하고 있어서 현행법의 완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체계·자구 조문 정비 사항입니다.

다음 12쪽, 실용신안법입니다.

여기에도 부칙 사항에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의 제명을 수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없습니다.

13쪽, 디자인보호법입니다.

이 조문대비표에서도 특허법의 수정 사항과 동일하게 같은 취지로 수정을 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수석님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권리 회복 시 내야 될 수수료에 대한 계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액으로 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제81조의3제3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개정안 문구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실용신안법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용신안법 개정안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한다는 이야기지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맞습니다.

디자인보호법도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예,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민 예.

○김종민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속기록에 기록을 남겨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특허법의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가 기술 탈취 관련해서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법 개정안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 전반기 국회에서는 결국 다루지 못하고 넘어가는데, 우리 국회의 입법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약간 답답한 심정인데요.

한 10여 년 이상을 중소기업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나 중소기업의 요구를 담아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국정과제로 채택된 안이거든요, 이게. 여야 간의 이견도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법 조항이 많다는 이유로 이렇게 계속 진전이 안 되고, 부정경쟁방지법이나 하도급법은 통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메인이 특허법이에요. 특허법이 중심법인데 이 중심법이 통과가 안 되고 주변법만 통과돼서 작동이 안 되고 계속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국제소송 같은 게 제기되면서 해외로부터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 있게 되는데 변리사법도 변호사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변호사회 설득해서 합의를 다해 봤더니 감정평가사회에서 전혀 다른 문제 가지고 반대한다고 법사위에서 이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돼요, 우리 산자위에서는 통과가 돼서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민생에서 보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들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소송이 걸려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그 기업은 존망이 걸려 있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참 답답하고요.

차장님, 하반기 상임위 개의회가 되면 지금 이 특허법하고 변리사법 관련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되지 않아요?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새로 원 구성되면 정말 발로 뛰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지재처가 법사위하고 산자위 쫓아다니지만 말고 총리실하고 청와대하고 얘기해서, 이게 국정과제입니다. 중기부에서 이것 했다고 지금 1년 내내 자랑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실가동이 안 되잖아요. 이것 지금 거짓말이 돼 버렸어요. 하여간 책임지고 하반기 국회 개의회가 마자……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알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제가 산자위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차장님은 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다시 오도록 할 텐데 제가 못 오더라도 하여간 책임지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책임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제1항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도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이상 3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7쪽입니다.

먼저 3건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중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브로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문제를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각 개정안은 규정 방식의 차이로 인해 민사상·형사상 제재 범위가 서로 상이한 점을 고려해서 입법 공백이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표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와 관련해서 정진욱 의원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 행위의 정의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고동진 의원안은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유인 등의 행위를 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포함해서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욱 의원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소개·알선·유인행위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 되고, 고동진 의원안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적용되는 모든 규정이 소개·알선·유인행위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고동진 의원안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사적 제재의 경우에는 정진욱 의원안에 따르면 민사적 제재 적용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고동진 의원안은 민사적 제재가 중복돼서 적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 관련해서 정진욱 의원안은 모든 유형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소개·알선·유인행위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동진 의원안은 소개·알선·유인을 하는 대상인 영업비밀 침해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은 정진욱 의원안을 기준으로 제시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개정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영업비밀 침해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은 영업비밀 유출의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미 도입되어서 입법 취지가 달성되어 있습니다.

부칙 사항으로 영업비밀 침해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대해서 민사적인 제재 또는 신고포상금에 관해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는 적용례를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대해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고동진 의원안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동진 의원안 2항에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기존 현행법에 있는 11조 1항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 관련해서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24쪽 벌칙 관련해서는 정진욱 의원안과 동일하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부칙 사항에 보고드린 대로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수정의견으로 포함해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19쪽에 ‘다만’이라고 해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정진욱 의원안에……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의견의 수정입니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반영하지 않아도 이미 그 취지가 달성되었다는 취지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정진욱 의원안에서 삭제하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 이해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27쪽입니다.

세 번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장철민 의원안입니다.

개정안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수단에 해킹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수단을 절취·기망·협박 및 그 밖의 부정한 수단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킹을 명시적으로 기재하면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해킹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사 입법례로 자본시장법은 정보를 획득하는 부정한 방법의 예시로 해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개정안은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전득자가 부정취득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영업비밀의 사용·제삼자 누설 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추가로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단순히 보유하는 경우보다 이를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그 피해 정도가 더 크므로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의 부정취득 뿐만 아니라 사용·누설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여 영업비밀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30쪽, 31쪽의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지식재산처차장 정연우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연우 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해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5시 정도까지 할 계획입니다.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아서 좀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통상부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4건의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심사자료 2권 1쪽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먼저 이철규 의원안은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에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표시 의무화, 표시 정정 요구, 벌칙,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유통 확대 가능성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 및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안 제73조제4호(시정명령)를 문언에 맞게 자구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5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쪽 벌칙에 있는 시정명령을 ‘표시의 정정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들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8쪽입니다.

개정안은 계량기 양도 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및 소비자감시원의 직무에 형식승인·검정 여부 확인 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의 유통 및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감시체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입니다.

유통 단계에 대한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11쪽, 12쪽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3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은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면제, 교정절차·교정방법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계량기의 특성이나 활용 환경에 관계없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어서 신기술 기반 계량기 등의 시장 도입 및 활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일부 절차를 면제하는 등 각 절차의 이행 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식승인·재검정은 ‘면제할 수 있다’를 검정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해서 조문 체계상 차이가 있습니다. 검정을 받기 적합하지 않은 계량기도 형식승인·재검정과 마찬가지로 ‘면제할 수 있다’로 체계·자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형식승인·검정·재검정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상 범위 및 판단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서 보다 구체적으로 위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9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5조(형식승인의 면제)에서 형식승인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계량기의 판단 기준을 추가적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23조(검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20쪽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재검정 관련해서는 21쪽 24조 2항에 같은 취지로 반영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자구 정비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권향엽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국가표준원에 보면 계량측정제도와 업무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그런 게 있지요, 실제로 현재도?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여기에 특별하게 지정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 법에서?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조웅환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정책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량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 일부 업무를 계량측정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정비되는 법안의 내용은 그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담 기관 지정을 통해서 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게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권향엽 위원 한국계량측정협회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에 그냥 충실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조웅환 원래 하고 있는데 법령 안에는 한 구절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권향엽 위원 보완하는 건가요?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조우환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25쪽입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이 계량검사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정기검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계량검사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27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28쪽입니다.

개정안은 제6절의 ‘측정기기의 교정’을 제2장의2 ‘산업계량 지원’으로 개편하고 산업계량의 정의 및 지원사업,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정밀측정의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할 경우 산업계량과 관련한 기술 보급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산업계량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면서 지원센터 지정요건을 법률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관련 입법례를 참고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3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수정의견은 35쪽부터 37쪽까지 제시하였습니다.

66조(청문)의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적 권리보호를 위해서 추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38쪽입니다.

개정안은 자율교정 대상 측정기기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아닌 산업통상부장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계량정책협의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기 기술 변화 및 산업현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계량 및 측정 관련 정책의 연계·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행안부는 기존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협의회 설치 여부와 관련해서 현행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가 국가표준 관련 부처 간 효율적인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해 보입니다.

41쪽의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41쪽 하단에 있는 수정의견 57조의2에서 국가표준법에 따른 국가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43쪽입니다.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 이상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4쪽입니다.

다만 개정안 문언상 현행 허용오차 기준을 유지하면서 평균량 기준을 추가하는 것인지 또는 개별 상품 단위에서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에 미달하는 경우를 전면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평균량 기준 도입에 따라서 정량표시 위반 유형 및 벌칙 적용 대상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관련 벌칙 규정의 체계·자구도 함께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47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의견 제41조 1항 하단에 현행 허용오차 기준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평균량 기준을 규정하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48쪽에 벌칙과 관련해서 정량표시 위반 유형을 보다 세부적으로 각 목별로 구분해서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구자근 위원 잠시만요, 하나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소위원장 박성민 예.

○구자근 위원 그러면 허용오차 개념이 사실상 폐지되는 겁니까?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된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유지하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유지하면서 상향 방향만……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조용환 적합성국장입니다.

말씀하신 게 오차 개념인데요 그건 유지하고요, 거기다 평균량 개념을 플러스한 겁니다. 더한 겁니다.

○구자근 위원 더 손해 안 보게 하겠다 이 말이네요, 그러면?

○국가기술표준원적합성정책국장 조용환 예.

○구자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자료 49쪽입니다.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근거 신설,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시판품 조사,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업무를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김원이 의원안에서 산업계량지원센터 지정취소 관련 청문 근거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있으므로 체계·자구의 정비를 하였습니다.

조문대비표 52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4쪽에 산업계량지원센터 관련 청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6쪽입니다.

개정안은 정량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위반사실 공표 근거를 마련해서 소비자 보호 및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위반사실 공표는 시정조치 불이행 시 공표하는 유형과 위반행위 자체를 공표하는 유형으로 구분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량표시 위반행위 자체를 공표 대상으로 추가하고 있는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공표가 가능하도록 단계적인 구조로 정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59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수정의견에는 정량의 표시를 명하거나 표시의 정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0쪽에 부칙 사항이 있는데 간단한 사항이라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포 후 시행 시기 관련해서 시행일을 각각 공포 후 1년 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

정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정비 등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서 시행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두 개 다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시행시기는 그러면 6개월 또는 1년인데……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1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이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61쪽입니다.

개정안은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등을 CCUS 시설,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그 밖의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됩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원상회복의무를 부과되 새로운 해저조광권자에게 시설을 이전하거나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경우에 기존의 인공구조물등의 불필요한 철거 비용을 최소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원상회복의무 면제에 따른 별도의 공익적인 기여가 인정되는 사업으로 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2쪽입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기존 인공구조물등을 새로운 용도로의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 최종적인 원상회복 필요성이 사후에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최종적인 원상회복의무 이행 방식 및 비용 분담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와 개별 법률의 소관 부처가 중장기적으로 공동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개정·시행되어서 관련 문구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대비표 66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7쪽 수정의견의 4호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고 5호는 별도의 공익적 필요를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문구를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이게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는 건데 요건들이 좀 추상적이지 않나 싶어 갖고요.

예를 들어서 67페이지 3호, 4호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또는 활용시설로 활용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기준이 없이 실제로는 별 의미도 없는데 원상회복을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로 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는 거의 무의미한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게 되면 해양에 인공구조물들만, 불필요한 시설들이 남는 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3호, 4호의 요건이 거의 5호처럼 무언가 공익적 기여…… 당연히 3호, 4호가 그런 공익적 기여를 전제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냥 이렇게 3호, 4호에 해당되는 시설이면 모두 다 의미 있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제 질문이 좀 불명확한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아닙니다.

우선 3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의미가 명확성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다른 것보다는, 이 법률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포집·수송·저장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성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은 없지만 용도에 있어서, 활용성에 있어서 다른 것과 관련이 있거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4호에서는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 보면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부분은 나중에는 기술개발이 혹시 어떻게 발전이 돼 가지고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는 굳이 이걸로까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해상풍력을 생각하고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4호에 대해서는 해상풍력으로 한정하는 것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법체계가 19조의2 1항 단서에 보면 이런 면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가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는 아닌데 나중에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이 기준 없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특정 조광권자에게 혜택을 줬다거나 하는 문제 제기가 없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법에 위임이 안 돼 있는데 그런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이민영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예.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자원안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해저 인공구조물은 사진에 있는 동해 가스전이 생산 종료로 돼서 채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인공구조물의 재활용 논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3호의 CCS 저장지로 다시 활용하는 것은 이산화탄소 포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저장후 보지의 선정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심의자료 64페이지 참고자료로 돼 있고요.

그래서 제14조 3호에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19조 제2항에 따라서 천연가스 해저조광권이 소멸된 해저조광구’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으로 특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는 데 있어서 너무 브로드하게 넓혀져 있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인공구조물이 이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CCUS법이나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원상회복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면제를 받았던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원상회복의무를 명하고 그다음에 회복이 잘 됐는지는 CCS 관련인 경우에는 기후에너지부장관이 확인하고 승인하도록 그렇게 사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권향엽 위원님.

○**권향엽 위원** 과장님, 금방 동해 가스전 사업 이야기하셨지요?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예.

○**권향엽 위원** 동해 가스전 철거를 하려면 3년간 약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런데 지금 석유공사는 자본잠식 상태이잖아요.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예, 맞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을 갖다가 회피하기 위해서 해저광물자원법을 개정해서 원상회복의무 예외 조항을 넣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석유공사의 자본잠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 근본적인 다른 검토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재정을 투입하는 걸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인 것 같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 것, 두 번째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석유공사의 방만한 경영이나 또는 투자 실수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 정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금방 말씀 올린 석유공사의 잘못된 부분과는 별개로 저 사진에 보는 것처럼 동해 가스전 문제를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시급하다 보니 그 처리를 바로 할 수가 없고 법에 규정이 필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니까 맞는 거지요, 저 지적이요. 사실 일정 부분 그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예외 조항을 넣는 건 맞는 거지요. 포함한 거지요.

산업통상부 시절이었던 2025년 10월에 CCUS 실증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철회했지요?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예타 결과 경제성이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향엽 위원** 그러면 CCUS 사업 활용이 이 법 개정의 첫 번째인데 지금 CCUS 대상

사업은 대략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위원님, 답변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활용의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권향엽 위원** 활용의 근거를 만드는데 굳이 타당성이 없어서 실증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가 철회를 했는데 다시 또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것 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다시 설명을 드리면 64페이지에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에 관한 법률에 저장후보지 선정으로 해서 해광법에 조광권이 소멸된 해저 조광구가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체계를 맞추고자 이 조항을 넣게 됐습니다. 그렇게 근거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CCUS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타 부분 쪽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저희 정부 쪽에서는 CCUS의 사업의 필요성과 이 부분을 선진국이나 다른 경쟁국들 또는 NDC하고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문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정부 내에서는 인식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타 부분 쪽은 사업성 부분과 연관되다 보니 각 시기에 따라서, 예타를 추진했던 때는 분명히 그 사업성이 좀 부족해서 예타에서 탈락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 위기부터 시작해서 또 NDC 부분이 진행되는 단계에 있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향엽 위원** 그리고 동해 가스전의 위치는 울산 남동쪽에 58km 떨어진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권향엽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신에너지인 수소·연료전지라든가 석탄 액화·가스화 이것도 불가능한 상태 아닌가요? 그렇지요? 태양광이나 수력, 지열, 바이오, 폐기물도 사실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법 중에서 이 부분 쪽은 해상풍력에 한정하는 쪽으로……

○**권향엽 위원** 수정해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좀 한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권향엽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원이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지금 권향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재생에너지법 중에서 해상풍력에 한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쪽에서 문구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서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제가 수석전문위원님께 전달해서 문구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수정하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이해가 안 돼 갖고, 법안 내용의 취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원상회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원상회복을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고 지금 요건을 안 맞추니까 뭔가 경제성도 안 맞고 실제로는 탄소 포집 효과도 별로 없는 건데 그냥 그걸 이유로 원상회복 면제를 시켜 주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그래서 산업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그동안 조광권 부여하고 잘못된 시추를 한 것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회계상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걸 추진하는 것 같다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몇 년 지나면 이걸로 만약에 면제가 되면 다음 국회에서 산업부장관 왜 이걸 승인해 줬냐, 결국 탄소 포집 얼마나 했냐, 효과 거의 없지 않았냐, 결국 이걸로 원상회복의무 면제만 부당하게 준 거 아니냐 이런 공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탄소 포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허용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원상회복을 하는 것보다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해야지 지금 같아서는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반대하면 지금 통과가 안 됩니다, 숫자상도.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소위원장 박성민 김한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조금 더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은 지금 의결정족수가 여섯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지금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일단은 10분 정도 정회를 할 테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차관님께서 좀 의견 조율을 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성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정부 간에 어느 정도 의결이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67쪽입니다.

3호, 4호, 5호의 사항인데 5호 현행에 있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그대로 두고 수정의견의 5호에 있던 사항을 현행 19조의2 1항 단서 부분에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를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는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으로 실무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에서 이 문구를 딱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이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수정의견에 대해 정부 측은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만 구하려고……

○소위원장 박성민 어지간하면 이제 그만하세요.

○김한규 위원 표현을 들으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산화탄소 포집이든 재생 에너지 개발이든 이것은 사업 주체가 누구든 상관없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문구 자체를 보면. 그러면 이것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상구조물의 소유권을 계속 가진 채 사업을 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삼자한테 사업권을 넘겨서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겁니까?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자원안보정책과장입니다.

지금 문언상으로는 주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호· 2호의 경우는 조광권자가 다른 조광권자에게 넘기는 경우이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3호~5호는 주체가 열려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열려 있다?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예.

○김한규 위원 그러다가 나중에 더 이상 재생에너지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김한규 위원 원상회복해야 돼요?

○산업통상부자원안보정책과장 이민영 예.

○김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사실은 우리가 동해 저기도 한번 가 보고 다 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김한규 위원 하반기에 가십시오.

○소위원장 박성민 예, 하반기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꼭 하반기에도 산자위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69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은 주된 산업의 정의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적인 기준을 충족한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시에 주된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지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시 주된 산업의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등을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산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을 새로이 정의하고 현행법 제4장의 지원을 산업위기지역 전체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제4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인력양성·연구개발·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산업위기지역을 정의하고 산업위기지역 전체에 대해서 제4장의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회복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0쪽입니다.

개정안은 소부장특별회계를 사용하여 자금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위기지역 소재 소부장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입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금을 사용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중은행의 자금의 경우 자금의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아닐 수 있으므로 협조 요청의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해당 자금의 관리주체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71쪽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사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목적이고 각 호에 있는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면, 지정 요건의 하나에만 해당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사후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운영 목적이고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문대비표 73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74쪽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현행 4장에 있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정의 사항에 산업위기지역을 새로이 규정하면서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전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15조부터 79페이지 20조까지 산업위기지역의 개념 신설과

지원 범위 확대에 대해서 반영 여부를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체적으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수정의견 중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원안의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고 네 곳이 나와 있는데…… 전남 여수, 서산, 포항, 광양 이 네 곳은 어떻게 지정이 됐습니까?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지역경제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업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정 요건에 대해서 산업부에서 검토를 하고 현장 실사를 거쳐서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아니, 그건 절차고 이 네 곳이 절차 말고 어떤 사유로 지정이 됐냐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이 지역을 보시면 우선 석유화학단지하고 관련된 지역이 있고요, 또 철강과 관련된 지역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보면 석유화학 구조조정 문제, 철강산업 구조조정 문제하고 연관돼서 지정되었던 지역들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차관님, 석유화학이라고 하면 사실은 울산 석유화학이 제일 큼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전국에서도 제일 크고 과거에는 산업 전반의 60% 이상을 석유화학에서 담당을 했었는데, 그래서 울산은 석유화학이 빠졌는데…… 울산은 사실은 석유화학이 작년, 재작년 엄청 어려웠잖아요.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조금 한숨 돌리고 있습니다. 마는 아마 앞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중국을 비롯한 중동 지역 때문에 석유화학산업 자체가 어려울 건데 그런 쪽에서 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고 하면 울산 석유화학도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울산 석유화학 계시는 분들이 엄청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구조조정만 자꾸 요구하고 할 게 아니고 선제대응지역 이런 데 좀 넣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다른 지역보다 울산이 저희들 정부 내에서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은 지역이기는 합니다. 말씀처럼 석유화학 부분 쪽은 울산도 구를 중심으로 해서 남구 쪽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울산 전체로 가면 조선하고 자동차 부분 쪽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13일 날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울산시와 또 남구하고 같이 한참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여기 보니까 기초단체별로 신청을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아시다시피 울산 석유화학단지는 남구에 있고 자동차는 북구에 있고 조선은 동구에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래서 이 석유화학이 울산 남구의 전체 산업인데 거기가 완전히 지금 휘청거리고 있으니깐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저 하나만 여쭙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성민 예.

○박지혜 위원 15조 1항에서 기존에는 설비투자, 공장의 신설·증설, 경영혁신, 업종전환 및 운전자금 확보와 같이 예시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걸 삭제하자는 거지요, 개정안의 취지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맞습니다.

○박지혜 위원 근데 왜 삭제를 해야 되나요? 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금 개정안에 따르면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게 될지에 대한 기준이 법에 전혀 없게 되는데 삭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려고, 내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에다가 그 관련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박지혜 위원 이 문구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법에 시행령에 어떤 것이 들어갈지 예측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지원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법에 하나하나씩 정리를 안 해도 시행령에다가 그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면 충분히 명확해질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처럼 예측가능성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인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할 때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종합적으로 정부가 검토할 수 있게, 법에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해당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엄격성 부분이 있어서 지정을 하는데 좀 더 어려워질 가능성까지를 고민해서 이 부분 쪽을 대통령령으로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대통령령에서 바뀔 수 있게 그렇게 좀 융통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0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도 계획의 수립 시 공고 및 주민의견 청취 의무를 시도지사에게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현행법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전에 관련 계획을 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해서도 동일 의무를 부과하여서 법적 일관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부는 선제적 조치의 신속성이 필요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시책 수립 의무 부과, 협조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시 검토 사항에 대해서 시행령 위임이 아닌 산업통상부장관 판단 재량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장관의 재량을 강

화해서 개별 사례에 맞는 유연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81쪽부터 조문대비표 내용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1쪽 8조 3항에 있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에서는 현행대로 유지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다른 사안은 검토의견에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조 3항은 현행처럼 하는 게 좀 더 빨리 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하는 방안이라고 산업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8조 3항은 삭제를 해서 현재의 법령처럼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권향엽 위원님이 안 계셔서…… 권향엽 위원님께서 20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정부안에 하여튼 저는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재량에 관해서 전문위원이 여기 80쪽에 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여기까지만 해 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뒤쪽에 세부사항에 넘어가서 84쪽에 보면 ‘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그 정당한 사유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몇 번, 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당한 사유를 물론 장관에 재량권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까지가 정당한 사유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사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당한 사유 부분보다는 정부의 각 부처가 자기들 입장만을 생각해서,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것만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그러한 일반적인 반대가 이 부분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특별히 이 부분은 지역위기 대응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량을 산업부장관에게 부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그 정당한 사유의 결정이나 범위나 그걸,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관계에서 각자는 자기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요구서를 달고 제안을 할 건데 그걸 누군가가 위에서 중심을 잡아 주지 않고 이 조항만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가나요?

그러면 ‘따라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걸 거부하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재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제재를 하나요? 그러면 실효성 문제도 생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실효성은 있습니다만 법에 이 조항이 있는 걸 가지고 저희 산업부가……

○구자근 위원 그림을 좀 더 잡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법에 있는 것을 관계부처가 어기면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부분이 산업부의 굉장히 큰 권한과 또는 추진력에 있어서 발판이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역과 또 지역의 위기에 대해서 이 정도는 산업부 쪽에 재량이 있어야만 그나마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구자근 위원** 저도 충분히 산업부 측 의견에, 현장에서의 문제나 신속성이나 시급성이나 이런 것 충분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래도 정부가 만드는 법안에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라고 할 때 그 정당한 사유에 과연 누군가가, 이게 나중에 법적 문제가 됐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까지 해석할 것인지 여러 가지 플랜 원투, B가, 쓰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여튼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8조 3항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수석전문위원님? 정부에서는 빼 달라고, 현행대로 하자는데요.

○**김원이 위원** 정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러면 현행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현행대로 하는 걸로 할까요?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5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 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인 제도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전환 절차를 신설하면서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전환 절차는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된 산업의 회복이 더딘 경우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및 지원 제공이 가능한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서 기존의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전환 절차가 폐지되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88쪽부터 90쪽까지 참고하시면 되고, 말씀드린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부분이 88쪽 맨 하단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논의 필요로 되어 있는 고용위기지역의 전환 절차는 폐지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원안대로 폐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 이유는 특별위기지역으로의 전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지 고용위기지역과 선제대응위기지역의 기준들이 서로 다른 문제여서 이 부분에 대한 전환 절차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기존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전환 절차는 폐지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1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위기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장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법 제10조 4항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시책의 수립 주체는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공동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현행과 같이 시책 수립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에 있는 단서규정이 불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단서규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산업부장관 단독으로 시책을 수립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딘 경우에 3년의 범위에서 후속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2쪽입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지정해제 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 대신 각각 산업부장관, 시도지사의 판단 재량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연한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93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94쪽 후단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체적으로 수정의견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신 94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구자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똑같은 부분입니다.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부분을 여기에서도, 아까 정부 쪽에서 설명드린 이유로 이 부분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이걸 수석님한테 한번 여쭙볼게요.

이 조항이 들어가면 어때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구조가 조금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체계상, 법률 구조상?

그러면 대안이 있나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설명을 드리면, 조문대비표 있는 93쪽입니다.

맨 밑의 부분 보시면 현행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쪽 해서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서 산업부장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이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후단에 있는 내용, 지금 개정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산업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구가 거꾸로 돼 있다고 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산업부장관이 따라야 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아주 이상한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95쪽 개정안 하단의 20조의2를 보시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책무'라는 제명으로 있는 조의 내용을 보시면 '산업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협조·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찌 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조를 해야 되는 어느 정도의 책무가 있는 겁니다.

다시 앞에서 말씀을 드리면 공동으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박지혜 위원 지금 해당 조항 4항에서 앞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단서에는 그냥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거든요. 그 2개를 달리 쓴 게 이유가 있는 건가요? 93페이지 하단의 4항에, 지금 4항이 문제인 것이지요?

○김원이 위원 현행 4항이지요, 10조 4항?

○박지혜 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 수립하는 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고, 단서에 필요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는 행정기관은 그냥 관계 행정기관인데 그 2개는 같은 주체를 상정하고 썼다면 이상하다 그게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말이고 저도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뒤의 위당은 다르기는 하잖아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앞에는 관계 중앙.....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뒷부분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자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원이 위원 어떻게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뒤의 후단 부분도 자꾸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원이 위원 자꾸 수정안을 줘 보세요, 그러면.

○박지혜 위원 그냥 '중앙'을 넣으면 되는 거지요.

○김원이 위원 '중앙'을 빼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아니, '중앙'을 넣는 겁니다.

○김원이 위원 넣자?

○박지혜 위원 그런데 '중앙'을 넣어도 이상한 거지요. '중앙'을 넣으면 어쨌든 완벽하게 같은 주체를 상정하는 건데 앞에는 공동으로 수립하고 뒤에는.....

○김원이 위원 산자부의 명을 받아야 되는, 요청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박지혜 위원 그게 좀 이상하다는 의견에 저도.....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중앙'을 넣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해소됩니까?

○박지혜 위원 해소가 안 되지요.

○구자근 위원 94쪽 위의 저결 아예 없애 버리면 안 되나, 밑에 20조의2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김원이 위원 95페이지의 20조의2로 합치면 어때요? 구자근 위원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박지혜 위원 곳곳에 다 이걸 넣어 놔어요.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의 결의와 각오는 충분히 느껴지나……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것마저도, 같이 수립을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버티지 않습니까? 같이 한다면 해 놓고 그 부분에서 결국은 결판을,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하는 결기를 저희들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것도 공동으로 하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공동으로 한다는 걸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이라고 하는 말을 꼭 넣어야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산업부의 입장이지는 합니다.

○김한규 위원 그래도 94페이지 상단의 ‘이 경우……’는 빼도 될 것 같은데요.

○김원이 위원 20조의2가 있으니까.

○김한규 위원 예, 95페이지 20조의2가 있으니까 아무리 산업부의 결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불필요한 부분이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이 부분은 말씀처럼 20조의2에 있고 또 그 앞에도 있기 때문에 동의어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빼고 20조의2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구자근 위원님은 간사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훌륭한 조정안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97쪽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의 ‘산업활동’을 ‘주된 산업의 활동’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침체 대상 산업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개정안은 긴급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주요 용어 수정에 따른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98, 99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한규 위원 그런데 ‘경우로써’가 맞습니까? 98페이지에 ‘경우로써’가 맞나요? ‘로서’가 아닌가요?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로서’입니다. 자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의결은 잠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6건의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

해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심사자료 3권입니다.

1쪽입니다.

개정안은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의 신속한 제·개정, KS와 KC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국제표준화 현황 공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광공업품에 대한 산업표준의 신속한 제·개정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KS와 KC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한편 국제표준화 대응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 제5조 6항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광공업품을 규정하면서 안 제5조의2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광공업품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대상 범위 및 용어 체계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위에서 수정의견으로 제5조 6항에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광공업품’을 ‘이하 고위험 광공업품이라 한다’로 정의하고 5조의2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광공업품’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7쪽입니다.

개정안은 산업표준안을 고시하고 검토 중인 경우에는 산업표준 적부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표준의 개정·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제10조에 따른 적부확인을 별도로 실시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해서 중복 심의 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의 조문대비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쪽입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KS 인증 대상을 설계·설치·운영 분야까지 확대하고 인증심사 유형 관련 사항을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희 의원안은 KS 인증 대상을 개발·설계 분야까지 확대하고 인증심사 유형은 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건 개정안은 제조업 중심의 KS 인증체계를 개발·설계·설치·운영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고 인증심사 유형을 같이 다양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인증 대상의 범위, 인증심사 유형 결정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인증 대상 범위와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설계·설치·운영에 대해, 오세희 의원안은 개발·설계 분야를 정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유형 결정 방식에 대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산업표준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오세희 의원안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희 의원안은 불필요한 심사를 최소화하는 노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시험·검사를 중복적으로 수행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15쪽부터 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15쪽 하단의 제15조(제품의 인증)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과 같이 제조, 설계 또는 설치·운영하는 자로 제한을 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오세희 의원안의 개발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수정의견을 이렇게 제시하였는데 여기에 오세희 의원안에 있는 개발 사항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제조, 설계에서 개발이 어느 정도 포함된다고 이해를 하였는데 이것을 영어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 보면 분명히 다른 것으로 느껴져서 개발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 외의 사항들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개발을 포함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의견까지를 포함해서 전체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20쪽입니다.

송재봉 의원안은 인증받은 자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기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정기심사의 일부를 면제하거나 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 등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정기심사 운영을 합리화하고 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반복적인 정기심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입니다.

정기심사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송재봉 의원안은 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해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오세희 의원안은 품질경영 수준이 우수한 경우 등에 일부 면제하거나 주기를 연장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산업표준 활용 우수기업 등을 지정하여서 정기심사 주기 연장 등 필요한 지원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기심사 완화 사항을 중복적으로 규정하는 측면이 있어서 일부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3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세희 의원안에 있는 19조 1항 단서에 있는 다만의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제31조의5제2항에 반영을 해서 산업부장관은 우수기업에 대하여 19조에 따른 정기심사의 주기를 연장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27쪽입니다.

개정안은 KS 인증표시 등이 없는 제품에 KS 인증표시 등을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등에 대한 확인조사 근거 마련 및 확인조사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허위 KS 인증표시 제품에 대한 확인조사 제도를 신설해서 불법 제품·서비스에 대한 조사·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온라인상 불법 제품·서비스 등이 유통되는 경우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정보 삭제·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불법 제품·서비스의 온라인 유통 방지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31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구 정비 사항 외에는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40쪽입니다.

개정안은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실시 사유 확대 및 시판품조사·현장조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인증제품 및 인증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재관 의원안은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실시 사유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외에도 그 밖에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필요한 경우 자체적인 조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해 보입니다.

41쪽입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범위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한편 시판품조사·현장조사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 규정을 확인조사에도 함께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4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쪽의 확인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절차를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50쪽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산업표준인증관리 전담기관을 지정해서 인증기관 지정·취소, 인증 관련 정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담기관 지정취소·청문 및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 적합성 인증 및 관리 업무 또 전담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개정안은 전담기관의 업무 범위에 시판품조사·현장조사 지원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데 확인조사 지원 업무를 함께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훈 의원안에 따른 21조의2의 제품 수거 등의 조치 이행현황 점검 업무 역시 전담기관의 지원 업무에 포함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쪽 하단에 있는 사항은 확인조사 지원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특별한 쟁점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57쪽입니다.

개정안은 인증제품이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경우 등

에 제품수거 명령, 이행현황 점검, 보완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과태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품수거 제도의 요건·절차 및 사후관리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소비자 보호 및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거 등’으로 개정안에 반영할 경우 관련 체계·자구 정비가 필요해 보여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61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쪽의 수정의견에 있는 것은 개정안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의 수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수거, 교환, 환급, 수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로 해서 ‘이하 수거등’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이후의 사항들은 관련된 내용들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4쪽의 경우에는 정진욱 의원안에 있었던 전담기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는 수정의견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68쪽입니다.

개정안은 인증제품 또는 인증서비스를 고의로 한국산업표준 또는 인증심사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제공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시판품조사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증 제품·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박성훈 의원안은 조사 거부·방해·기피, 거짓 자료 제출 등의 경우 인증제품 사후관리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품수거 제도 정비와 연계해서 실효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0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구 정비 사항 외의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75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KS 인증 취득·유지 지원 근거 그다음에 공공기관 등이 단체표준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산업표준화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공공구매 확대 및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바람직해 보입니다.

박성훈 의원안은 우수 단체표준서비스를 우선구매 대상에 추가하고 인증제품에 대한 검사·인증 등의 면제 대상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인증제품에 대한 중복 검사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77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계·자구 사항 이외의 수정의견은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81쪽 부칙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정비나 제도 운영 준비 기간을 감안해서 설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6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의결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13항 법률안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82쪽입니다.

개정안은 폐광지역 여행객이 진흥지구 내의 면세품판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세·부가세·개별소비세·주세 및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입니다.

현재 석탄광산이 폐광함에 따라 폐광지역 7개 시군의 인구는 50%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실정이고 이에 조기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폐광지역에 지정면세점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기폐광에 따른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체산업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83쪽의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로 하시고, 84쪽에는 국내 내국인 면세점 운영 현황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85쪽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범명이 바뀌면서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 지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 사항을 반영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단서조항인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정부 측도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 위원 산업부차관님이 얘기하신 거는 그냥 재정경제위의 결론에 따르겠다라는 내용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한 건데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뭡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산업부는 법안의 취지대로 폐광지역에 대한 내국인 면세점 설치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진흥에 기여하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한다는 게 산업부 입장이고, 질문 주신 것처럼 재경부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한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통과 안 되는 거니까 저희가 이것을 통과시키면 결국 반대로 재경위에서는 산중위에서 통과시켰으니까 통과시켜야 된다는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산업부가 그렇게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걸 전제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정부 측 입장을 정할 때 부처 간에 협의를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재정경제부랑 협의를 해 갖고 부처의 의견을 통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경부 측과도 협의는 했습니다만 재경부는 조특법상에서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고 현 상태에서는 반대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시하기는 했습니다.

○김한규 위원 반대 이유가 궁금한 건데요. 이렇게 면세점을 폐광지역에 설치하게 되면 혹시 다른 지역에도 설치 요구가 있을 수 있어서 형평성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내국인 카지노를 설치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위한 방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이 중으로 마련하는 거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산업통상부석탄산업과장 김정기 석탄과장 김정기라고 합니다.

오기 전에 기재부 조세특례제도과랑 협의를 했을 때 재경부 내에서는 세제 감면에 대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이다 하는 의견을 줘서 마찬가지로 그 입장에서 이 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그 문제는 지난번 법안소위에 올라왔을 때도 그런 얘기가 국회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

○**김원이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민** 예.

○**김원이 위원** 차관님, 이게 지금 산업부는 취지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고 기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데 일하다 보면 곳곳에서 지역의 이런 현안들이 있는 게 사실이고 산업부는 좀 더 그 지역의 산업 진흥이라든가 개발, 발전 이런 걸 위해서 이런 특례조항들을 두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런데 기재부는 아무래도 세금 걱정해야 되니까, 재정 걱정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럴 텐데, 자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산자위에서는 통과시켜서 올라갔는데 법사위에서 잡혀 가지고 끼룩끼룩 하고 있으면 사실 저희들 자존심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 있습니까? 한번 다뤄 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법사위에서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재위를 완전히 설득해서 법안을 완성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거고 법사위에서 충분히 한번 다뤄 볼 만하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 기회를 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재경부가 반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말씀드리되 이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 지역경제 진흥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부로서는 공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사위에 가서 한번 다뤄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이 위원**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철규 위원장님한테 꼭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차관님, 지금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에 면세장, 면세품 판매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석탄산업과장 김정기** 석탄과장입니다.

현재는 아직 설치된 곳이 없고요, 앞으로 이 법 개정이 되면 이걸 근거로 설치를 하겠다……

○**소위원장 박성민** 면세품점을 폐광지역 내에, 강원도 일부에 만들겠다 이 말입니까?

○**산업통상부석탄산업과장 김정기** 예, 그렇습니다. 법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다른 폐광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면세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곳은 아무래도 카지노가 있는 강원랜드 쪽에서는 연결효과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강원랜드에 면세품점을 넣어서 폐광지역 사람들에게 일부 혜택을 주겠다. 어떤 혜택입니까?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주세…… 술이나 담배 이런 거 말입니까?

○산업통상부석탄산업과장 김정기 지금 제주도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를 갖다가 강원도 육지에서도 폐광지역에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산다든가 주류를 산다고 할 때 면세가격으로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박지혜 위원님.

○박지혜 위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 이 폐광지역에 내국인 면세점이 생기면요 지역에 경제적으로 이득이 가는 게 어떤 게 이득이 가나요? 여기서 담배 많이 사고 술 많이 사면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얻는 이득이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석탄산업과장 김정기 그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혜 위원 아니면 그걸로 관광객을 유인해 가지고……

○산업통상부석탄산업과장 김정기 관광객을 유인하고 그다음에 면세라고 하는 게 특허제도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추가적으로 세입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지역에 쓸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요.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에 대해서도 매출의 13%를 걷어 가지고 강원도에, 그 지역의 경제 발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지혜 위원 그러면 여기 내국인 전용 면세점을 만들어서 얻는 매출의 일부를 그 지역에 환원하도록 한다 그런 계획이 있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석탄산업과장 김정기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찌 됐든 간에 제도가 통과되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한규 위원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고 의견인데요. 산업부가 법사위에서 싸워 보겠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재경위에서 처리될 때 이 법안도 같이 처리하는 게 맞지 이거를 처리했다는 이유로 또 법사위에서 양 상임위 간의 의견이 다르거나 아니면 법안 처리가 다르다라는 방식으로 갈등을 초래하는 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가 이거는 저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부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정부안을 된다 안 된다고 정해야지 산업부가 가서 싸우겠다, 재경위에서는 통과가 안 될 텐데 그러면 법사위에서 이 법만 그냥 계류되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법안 처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산업부가 재경부를 설득해서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처럼 재경부의 세제실과 협의를 통해서 재경위에서, 지금 이철규 의원님께서 재경부에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을 해 놓으신 상황이어서……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철규 의원님이 이 법의 우리 산업위 통과만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재경위에 제출되어 있는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다는 전제까지도 돼 있기 때문에 김한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경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재경부하고 협의를 진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 계속심사 하자는 뜻인가요? 일단 오늘은 결론 내지 말자는 건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부는 그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아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에서 의결하고 실질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상정 보류하는 것도 있잖아요. 굳이 소위에서 우리가 잡아 놓고 이걸 계속심사하는 것도 타당하지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김원이 위원** 위원님 생각이 분명하니까……

○**구자근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이 폐광지역에 대한 또 국가기간산업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관님, 산업부의 입장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법안 취지에.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플러스 또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취지들을 고려해서 저는 이 소위에서 그래도 이 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혹시라도 그게 김한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동의가 되면 또 거기서 보류하는 방법이 어떨지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 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절차는 그런데, 소위에서 하든 전체회의를 하든 또 재경부하고 의논을 하든 어떻게 하든 절차는 그렇긴 한데 이게 결국에는 강원랜드에 면세점을 넣자는 거거든요. 강원랜드에 면세점을 넣었을 때 강원랜드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편리가 훨씬 증진될 거고 그러면 사실은 폐광지역 사람들에게 대한 혜택보다는 강원랜드의 혜택이 훨씬 큼니다. 그게 주입니다, 사실은. 말이 폐광지역이지 강원랜드에 면세점을 넣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강원랜드를, 내국인 카지노를 만들 때 물론 폐광지역이지만 저 멀리 만들었던 말입니다. 도심 가까이에 만들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도 강원랜드는 성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차관님?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렇지요? 그런데 또 면세점까지 거기에 넣자 지금 그런 이야기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법률안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한규 위원** 계속심사 해 주십시오. 어차피 정족수도 안 되고……

○**김원이 위원** 정족수는 됩니다.

○**김한규 위원** 아니, 찬성 정족수가 안 되니까.

○**김원이 위원** 그렇지요.

아니, 그런데 김한규 위원님이 사실 본인 의사를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러면 찬반 논의하면 ‘부’잖아요.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계속심사로 남겨 두는 게,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소위원장 박성민** 정족수는 딱 되잖아요, 지금.

○**김원이 위원** 아는데, 여기 반대하면 5 대 1……

○**소위원장 박성민** 반대는 무슨 반대, 같이하면 같이 가고……

○**김한규 위원** 제가 일어나 버리면 됩니다. 나가면……

(웃음소리)

○**서일준 위원** 그러면 정족수가 안 되는 거 아닌가?

○**김원이 위원** 맞아요, 맞아요. 의결정족수 자체가 안 되니까 김한규 위원님께서 저렇게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보기에 는 여기서 표결을 해 버리면 부결돼 버릴 가능성이 오히려 높으니까 계속심사로 그냥 가능성이랄도 열어 두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일단 다른 법안을 먼저 심의하시다가 좀 더 고민하시고 그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해서 잠시 뒤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 이상 3건의 주얼리산업 관련 법률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조문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정법률안이므로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라는 국회법 제58조 6항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과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청회 실시 여부에 대해서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전체회의 의결 전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87쪽입니다.

제정안 3건은 모두 주얼리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주얼리산업 종합 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 주얼리업을 영위하려는 자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서 주얼리 거래의 투명화 및 양성화와 함께 가공기술·디자인 등의 선진화 등 주얼리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88쪽, 89쪽에 제정안별 목차 등을 비교표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쪽입니다.

먼저 제명, 목적, 정의 규정,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입니다.

법률의 제명 관련해서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또는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목적 규정에서는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내용을 적절하게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정의 규정에서는 공통적으로 주얼리, 주얼리원재료, 주얼리산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얼리원재료 또는 원자재 용어는 법률의 적용 범위와 관련이 있으므로 주얼리 제작에 핵심적인 품목 위주로 정의하려는 경우에는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원재료 표현이 적정

해 보이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의 입법례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 광상언 의원안은 주얼리원재료 정의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및 나석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나석 등도 주얼리의 원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2쪽입니다.

오세희·김동아 의원안은 원석, 보석 나석을 정의 규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석, 보석 나석은 일반적인 용어인 점을 고려해서 별도로 정의할 필요성이 있을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얼리산업 정의에 대해서는 주얼리 제조 분야와 주얼리 유통 분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조와 유통을 구별해서 규정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업 및 업자의 정의 관련해서 광상언 의원안은 주얼리소매업·주얼리소매업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세희·김동아 의원안은 주얼리업 또 주얼리업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제의 적용 범위를 주얼리소매업으로 할 것인지 주얼리업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3쪽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관련해서 주얼리산업의 관리·육성, 해외 전파 및 산업의 발전과 진흥, 고용 창출 등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고 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 사항 또는 국제기준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관련해서는 동 제정안이 진흥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 관련 책무 규정을 어느 정도로 명시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95쪽까지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문대비표는 96쪽부터 있습니다.

96쪽, 먼저 수정의견으로는 법률의 제명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1조(목적) 조항에 있는 내용에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 또는 지원에 대한 사항 중에서 오세희·김동아 의원안에 있는 것처럼 기반조성 및 진흥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 2조(정의)에서는 2호에 있는 ‘주얼리원재료’로 다른 법령의 입법례를 참조해서 원자재가 아닌 원재료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광상언 의원안에서 공업용 다이아몬드 등을 제외하는 사항을 수정의견에는 반영하지 않고 포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추가로 수정의견에 제시를 하였고 원석, 보석 나석의 정의 규정은 삭제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주얼리산업의 규정에서 5호에 있는 주얼리산업 또 6호의 주얼리업의 정의규정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조·유통 분야를 구분할지 또는 포괄적으로 하나로 주얼리산업으로 할지 등을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99쪽의 국가·지자체의 책무 관련해서 2항은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서 문안을 조금 다듬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산업부와 실무적인 협의를 거쳐서 제정법안이 진흥법적인 성격임을 고려해서 자금세탁 방지 등과 관련된 노력을 보시는 것처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체적으로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수정의견 중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96페이지의 법안명은 김동아 의원안의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98페이지의 주얼리산업이라는 논의 필요 부분과 관련해서 주얼리 제조와 유통 분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따라서 오세희·김동아 의원안대로 하자는 말씀입니다. 또한 6번 논의 후 반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얼리소매업 대 주얼리업으로 한 것과 관련해서 주얼리업으로 하자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한규 위원 차관님, 법안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개별 산업에 관한 특별법을 만드는 게 좀 이례적인데요, 물론 없지는 않습니다. 산업을 육성하는 법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어떤 산업의 경우에 이런 진흥 내지 육성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주얼리산업 같은 경우에 여기 자료도 보다시피 세계 시장 점유율은 0.3% 정도라서 실제로 국제시장에서 우리의 역할이 큰 산업은 아닌데 만약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유사 산업에서도 제정법, 육성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정부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산업부가 개별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기준을 혹시 갖고 계신 게 있는지 한번 참고차 문의드립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굉장한 논의와 논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우선 기간산업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 주요 산업들을 개별 산업 진흥 또는 육성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석유화학·반도체·조선 등을 일컫는 건데 이 부분마저도 각 개별 육성법으로 하는 것에서 오는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사실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산업발전법이 이러한 개별 기간산업 진흥법들을 포괄해서 일반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 산업 정책의 시대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필요하고 대신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산업발전법이 일반법으로서 그 부분을 큰 틀에서 규율을 할 수 있게 보완을 하는 방안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부분이 기간산업이 아닌 속칭 소비재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총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얼리산업진흥법에 이렇게 개별적으

로 가는 게 맞냐. 그다음에 두 번째, 소비재 이렇게 하려고 하면 소비재산업 진흥 또는 육성에 관한 법률을 아예 작성을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논의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기간산업에서 각 개별 산업들의 수요가 있는 것의 시급성과 수요의 절실성을 감안해서 또는 산업 정책적 측면까지를 감안해서 개별 산업 육성법을 하듯이 소비재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에서 입법 수요와 산업 진흥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먼저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프레임으로 소비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작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한규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구자근 위원 조금 전에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개별 산업에 대한 이런 법안 부분들은 충분히 잘 설명을 들었고요.

저도 이 관련해서 단독 입법이 다소 무리가 아닌지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음성적 거래도 계속되고 있고 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유통 그런 부분들 피해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이런 법안들을 마련해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 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가공기술이나 디자인이나 유통 관련해서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 취지에 맞춰서 법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 같은데 김한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모도 지금 보니까 한 0.3% 그렇고 내수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귀금속산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이 다 있지 않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말씀처럼 각각의 사안들이 기능적 지원과 관련된 법안에 의해서 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또 명장을 선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능에 관련된 일반법 속에서 중소기업 시책 중의 일부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 쪽을 좀 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주얼리산업을 특정해서 육성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입법적 목적은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자근 위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제가 보니까 산업발전법에 충분히 이 주얼리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공산품 유통 지원을 하기 위한 부분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충분하게 그 근거가 있고 또 관련 기술 혁신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다들 충분하게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이 제정법의 실익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 치고.

또 아까 폐광지역 관련해서 재경부와 충돌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습니다만 이 법 또한 다른 부처와 관계의 충돌성이나 혹시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국세청과 금융위하교의 이견이 있었습시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 상호 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합의한 문구로 변경해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금융위원회에서 요청한 대로, 금융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규제 내용이 진흥법에 규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부적합하며 주얼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의무 부과 및 구체적인 내용은 특정금융정보법 체계 안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냈네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거 플러스, 그러면 공정거래 부분은? 공정위의 의견은?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공정위에서는 특별한 이견이……

○구자근 위원 공정위의 의견이 있는데 왜…… 특별한 의견 없었어요?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입니다.

공정위에서는 특별히 반대의견이 없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따로 다른 특별한 의견도 없었어요?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예, 특별한 이견 없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된 건가? 관계부처, 공정위의 의견이라고 있어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할 것으로 한정해서 규정하도록 의견을 냈었는데.

나중에 따로 한번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제정법이라서, 소위 위원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법인데 제정법이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공정위 관련은 110쪽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이 있네요, 보니까.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저희가 과도한 등록, 자격증이나 원래 이런 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런 사항들은 다 제거를 해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님, 금융위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공정위에서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문구를 정리해서 공정위도 합의한 문구로 들어간다는 말씀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일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성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한두 가지 정도 정부안 나온 거 있지요? 그거 정리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96쪽 조문대비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은 김동아 의원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주얼리산업에 대한 정의도 오세희 의원안·김동아 의원안으로 하고 6호, 주얼리업에 대한 사항은 김동아 의원안으로 하겠습니다.

7호는 '주얼리업자'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매업 구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수정의견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01쪽입니다.

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상업 의원안은 기반조성기본계획으로, 오세희·김동아 의원안은 진흥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각 호 사항에 대해서 약간씩 표현의 차이가, 내용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공통 사항이 1호부터 8호까지 있고 그다음에 9호부터 11호까지 표현과 내용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2쪽입니다.

면세제도 운영, 전문면세점 허가 등은 관세청에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는 금융위 관련 업무인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고 재정경제부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할 사항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부처 및 업계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안부는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103쪽부터 104쪽의 조문대비표를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으로는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으로 기본계획의 명칭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하의 사항들은 그에 맞춘 자구 수정입니다.

105쪽입니다.

오세희 의원안의 9호, 10호에 있는 사항, 9호에 있는 사항은 재경부나 관세청에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아 의원안의 9호에 있는 국제교류, 해외 진출 관련된 사항은 그 앞에 5호에서 수출 촉진 및 한류 상품화에 관한 사항으로 반영해서 대체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김동아 의원안 10호에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 소관 업무인 점을 반영해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105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 중에 논의 필요 사항으로 되어 있는 9번을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는 수정의견과 10호에 있는 주얼리산업의 투명화에 관한 사항으로 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108페이지, 주얼리산업진흥위원회와 관련된 제6조에 대해서 논의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안은 행안부 의견을 고려하여 제6조를 삭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으면 정부 측 의견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10쪽입니다.

제정안은 업 및 업자의 등록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곽상언 의원안은 주얼리소매업으로, 오세희·김동아 의원안은 주얼리업으로 등록을 하

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서 분류를 할 때 주얼리업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주얼리업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등록제 도입 시에 진입장벽 또는 기존 사업자 퇴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과도한 등록 요건을 규정하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주얼리 업계 22개 협회 및 단체에서는 무자료 음성거래, 불량제품 제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시장 질서가 혼탁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조업·유통업 모두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곽상언 의원안은 사업소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오세희·김동아 의원안은 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 오세희·김동아 의원안은 정기적인 소양교육, 직무향상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주얼리 제조·유통·소매업의 미등록자 영업행위 금지, 등록 결격사유, 지위 승계, 처분효과 승계, 사업개시신고, 등록 취소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얼리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조·유통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취지 또 사업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서 반영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3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7조 주얼리업자의 등록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구 정비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120쪽입니다.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법거래, 탈세 등 이력이 있는 주얼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 근거가 필요하다는 산업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체적으로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31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법거래, 탈세 등의 이력이 있는 주얼리업자에 대한 등록 취소에 대한 근거 규정을 제4호로 신설하는 것에 대해 포함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김원이 위원 아니, 하나만요.

공정위가 사실은 어느 정도 등록제 도입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요건이 너무 과다했을 경우에 진입장벽이 되지 않겠느냐, 경쟁 자체를 제한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된 거지요?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입니다.

지금 등록 요건은 저희가 시행령에서 다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김원이 위원** 산업부장관한테 권한을 주고?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그렇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업체들에게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등록 요건은 신원 정보라든지 자금 출처 내역이라든지 이런 정도만 요청을 할 거고 어떤 특별한 자격증을 요한다든지 등록 요건을 그런 식으로 정할 계획은 아닙니다.

○**김원이 위원** 이게 실질적인 허가제가 된다든지 아니면 기득권 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원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다음 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120쪽의 4호에 차관님이 얘기한 31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불법거래, 탈세 등 이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제정안은 주얼리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진흥법 입법례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전문인력 양성, 창업·제조 지원, 품질검증·기술개발 등을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외 연수생 입국비자 및 취업비자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마련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비자 관련해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주얼리산업의 인력난 극복을 위한 해외 연수생 입국비자·취업비자 근거 규정 반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법무부에서 개별법에 이러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 관련해서는 해당 업무가 지식재산처와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업무인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22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3쪽의 수정의견에는 광상언 의원안에 있는 실태조사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24쪽에서도 동일한 취지에서 개인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6쪽에는 법무부의 반대의견을 고려해서 입국비자 관련, 비자 관련 지원 사항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128쪽의 김동아 의원안 하단에 있는 18조(주얼리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사항도 관련 업무가 지재처 소관인 점을 감안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법무부 의견 반영해서 아까 수석전문위원 하신 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130쪽입니다.

광상언 의원안, 오세희 의원안은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김동아 의원

안은 주얼리산업진흥단지 지정·조성 및 지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규정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선언적이고 정책적인 의미인 반면에 진흥단지 지정·조성 및 지원 규정은 보다 실체적인 규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얼리산업 유통 활성화 및 투자 촉진,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관련된 지원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세 감면 규정을 반영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우수주얼리 지정, 주얼리기업 평가 선정, 특별지원,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의 규정 관련해서 업계의 기술 경쟁을 유도하고 브랜드 육성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숙련기술 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 명장제도, 우수 숙련기술자 선정·지원 제도가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진흥업무 전담기관의 지정, 전통 세공기술과 현대 주얼리 기술의 융합·연계 지원 시책 마련, 우수사례 발굴·시상, 소상공인에 대한 우선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입법례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지원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추가해서 필요한 사업 경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2쪽입니다.

다만 전담기관 사업으로 주얼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해외 동향 및 정보 제공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금지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입법례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다음, 133쪽부터 조문대비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의견을 우선은 제시하지는 않았습지만 133쪽에 있는 기반시설의 확충 또는 김동아 의원안에 있는 진흥단지 지정·조성 등의 경우에는 좀 더 실체적인 의미에서 김동아 의원안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김동아 의원안으로 수정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조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재정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수정 의견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우수주얼리 지정 등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 있는 대한민국 명장제도 등 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수주얼리 지정 제도도 동일한 취지에서 반영하지 않았고 기업 평가 선정 및 지원에 대한 140쪽에 있는 사항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2쪽에 제26조(유사명칭 사용금지)도 동일한 취지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4쪽입니다.

위에 7호에 있는 수정의견에 금융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금지의 무도 포함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3항에 국가는 전담기관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전체적으로 수정의견에 대해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정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40페이지 김동아 의원안 기준으로 보면 23조, 24조 우수주얼리의 지정, 지정취소 그리고 25조 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법에 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건의드립니다.

이유는 말씀처럼 이게 유사 제도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또는 대한민국명장제도 이런 게 고용부에 관련된 법으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용부하고도 협의를 했지만 고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의드리는데 오히려 중복되는 부분은 고용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여기 이 법에 의해서 선정되지 않도록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고 이 법에서 주얼리라고 하는 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우수주얼리 지정 또는 지정취소 그리고 명가 선정 부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김동아 의원안 기준으로 23·24·25 부분이 이 법에 반영될 것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부 측의 23·24·25도 받아들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26조까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25까지라고 해 놓고 뭐 26까지 갑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유사명칭 사용금지.

○소위원장 박성민 수석전문위원님, 반영……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23조부터 26조까지 반영하면서, 26조에 보면 주얼리기업 명가 등이……

○소위원장 박성민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예, 포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다음에 또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147쪽입니다.

제정안은 주얼리업자에 대해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그리고 사업소 출입을 통한 행정조사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소 출입을 통한 행정조사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권한의 위임, 업무 위탁 관련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세희 의원안은 일부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가 없는 점을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미등록주열리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양벌규정,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등록영업이나 교육의무, 등록갱신 미이행에 대해 징역이나 벌금형은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48쪽입니다.

최근에 정부 정책과 입법 경향이 과도한 형벌이나 벌칙 등을 내용에 따라 행정형벌 등으로 완화하면서 부담을 낮추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산업부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서 표에 보이는 것처럼 수정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각각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객상인 의원안이나 오세희·김동아 의원안은 벌금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항들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모두 과태료 사항으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준비하였습니다. 149쪽부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151쪽에 오세희 의원안 제3항에 있는 국세청장에게 업무 위탁하는 사항은 수정의견에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칙 사항에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152쪽에 있는 벌칙 조항이 아닌 153쪽에 있는 과태료 사항에 관련된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단계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국세청장에 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반영하지 않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수정의견 전체에 대해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이 위원 이게 사실 아까 등록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건데요. 없는 규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등록이라든가 벌칙, 벌금 이런 것들은.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홍보 및 계도기간 그리고 혹은 실수로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정부 측에서 좀 더 정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은 있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우선 보고드려야 되는 게 현재 주열리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이 법을 희망하고 특히 등록제를 희망합니다.

무슨 말씀이나 하면 양지에 있지 않고 음지에서 하는 이들이 양지에서 실제 이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 사업 방해가 되고 또는 일탈을 일삼고 있는 게 오히려 사업에 방해가 되는 문제여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위법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들이 조직적으로 뭔가를 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자들마저도 등록을 포함한 이러한 법이 시행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계도를 갖고 홍보가 되어야만이 이 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나오니다마는 공포되고 발효되는 그 기간 내에 주얼리협회라든지 그런 데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홍보가 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또 소비자한테 이런 게 전가되거나 비용이 갑자기, 이게 등록제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는 거잖아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렇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러면서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 그래서 그게 소비자들한테 전가될 가능성 이런 건 없나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그 부분을 저희들도 좀 조사를 해 보고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려되는 귀금속을 통한 탈세 또는 좋은 말로 하면 자금세탁 그 부분과 관련된 불만을 소비자들께서 가질 수는 있을망정 오히려 이 부분이 가짜인지 진품인지, 이 업자가 진짜인지 아닌지 일반 건전한 소비자들은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해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오히려 포지티브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우선 148페이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벌칙·과태료에 대한 수정의견을 준비하면서 우수주얼리나 주얼리기업 명가 등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앓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당초 준비하면서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의견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광상언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오세희·김동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해서도 광상언 의원안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은 2개로 구별해서 거짓으로 우수주얼리 지정을 받거나 표시를 하거나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되거나 이런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를 한 묶음으로 해서 한 카테고리로 과태료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에 대해서도 과태료 수준을 결정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 측 의견을 한번 먼저 듣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과장님, 주얼리(소매)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상하고 있는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각 소매업자별로 말씀이신가요?

○**소위원장 박성민** 예.

○**산업통상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 김종락** 거의 대부분의 업자들이 지금 1년 1억 미만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지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원장 박성민** 1억 미만인데 등록 못 했다 또 폐업 미신고했다 이게 지금 과태료 1000만 원, 이게 너무 과한 것 아니에요?

정부 측 의견 어떻습니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말씀처럼 1000만 원 이하 부분은 과한 측면이 있어서 오세희·김동아 의원안과 같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조사 방해·기피까지를 포함해서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 정리해 보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지금 차관님 답변하신 사항은 148쪽 기준으로 맨 위에 있는, 간사님 말씀하신 게 등록하지 않고 주얼리(소매)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을 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좀 과하다는 지적의 말씀 해 주셨고,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수주얼리를 거짓으로 받거나 표시를 위반하거나 이런 경우, 조사 거부·방해의 경우에 500만 원 과태료가 적절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러면 위에는 1000만 원 하고 밑에는 500만 원 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위원장님, 저는 더 낮춰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500만 원 이하 쪽으로 전부 다 일괄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소위원장 박성민** 그렇지요. 500만 원 이하로 하고 교육 미이수는 300만 원 이하 그런 정도로……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지정을 받지 않고 평가 선정했다, 유사명칭 사용했다 이것은 얼마 정도 할까?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앞부분을 1000에서 500으로 하면 이 부분은 300으로……

○**소위원장 박성민** 300?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김원이 위원** 맨 밑에 있는 거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처음에 안 제시했던 것에서 변경하여 300만 원 이하 쪽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주얼리 지정’부터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그 항목, 새로 들어가는 항목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정의견으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등록을 하지 않고 주얼리업을 영위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인데 그것을 일괄 500만 원 과태료로 하고, 지금 공란으로 있는 우수주얼리 지정을 거짓으로 받거나 표시하거나 평가로 선정된 것을 거짓으로 하거나 또는 조사 거부·방해, 기피하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아까 조사 거부·방해, 기피는 500만 원이고……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거기는 5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그 외 유사명칭 사용, 선정 이것은 3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조사 거부·방해, 기피 이것은 의도가 좀 다르거든요.

○**김원이 위원** 다 300이 아니라 그것은 500?

○소위원장 박성민 예.

등록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 제일 나쁘다 하니까 이것 300…… 차관님, 조사 기피, 거부·방해 그런 정도로 정리하십시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다음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예,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자료 157쪽입니다.

부칙 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위법령 제정 그리고 업계가 도입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서 6개월 이상 충분한 기간을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경과조치로는 법 시행 이후 6개월 또는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주얼리 등을 판매하던 자에게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158쪽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등록 경과조치는 시행 후 1년 이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수정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3항까지의 법률안은 이를 통합·조정하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며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금 전에 의결하지 못했던 의사일정 제20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다른 하실 말씀 있으니까?

○김한규 위원 추후 논의하시지요, 계속.

○소위원장 박성민 추후 논의……

○김한규 위원 계속심사 하시지요.

○소위원장 박성민 계속심사 하는 걸로?

그러면 20항은 계속심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법률안의 자구 정리 등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오늘로서 우리 소위원회의 전반기 국회 일정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법률

안 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원이 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1분만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성민**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신학 차관 및 정연우 차장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희석 수석전문위원님 및 보좌진 또 행정실장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우선……

○**서일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성민** 김원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좀 아쉽습니다. 오늘 안건에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와 있었는데 결국은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논의하지 못하고 또 다음번을 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대전환을 하루속히 서둘러야 뭘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기에 관련한 법들을 저희들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만 법안을 낸 게 아니라 사실 구자근 의원님, 박성민 의원님, 전종덕 의원님 등 다른 당의 의원님들도 법안을 다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것을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하고 결국 하반기로 넘기게 돼서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반기 산자위 법안소위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이 법안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기록으로 남기고 수석전문위원님이나 산업부에서 좀 더 노력해서 가지고 이 법을 우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구자근 위원님 간사 맡으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성민 위원장님 계속 산자위에 계실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희들 기왕 계속하게 되면, 저도 산자위 계속하고 싶다고 의견 밝혔는데 산자위 계속하게 되면 이 법 꼭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 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성민**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이 간사님 말씀처럼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바쁨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었던 이유가 오늘 안건은 다 처리할 줄 알고, 그래서 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다음 후반기에 법안소위에 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을 시켜 줄 것을 저도 요청을 드리면서, 추가로 제가 차관님께 아까 전체회의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차관님이 전에 법안소위 때 약속했던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다음 6월 달 법안소위 때는 꼭 포함시켜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좋은 법안이 만들어져서 정말 조선산업이 우리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만큼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심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박성민 위원장님도 아마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당 위원님들도 꼭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서일준 위원은 떠납니까?

○서일준 위원 저는 지금 밀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에 밀리고.

○소위원장 박성민 하여튼 감사하고 제가 있으면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신학 차관님, 오신 지 한 1년 되셨지요?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차관님도 오늘 22대 마무리하면서 한말씀해 주십시오.

○산업통상부차관 문신학 제가 올해 산업부에서 30년을 근무합니다만 이렇게 위원장님 모시고 화기애애하게 정책을 논의하고 법안을 토론하고 그리고 통과시키고 하는 과정을 저는 이번 이 소위원회 말고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서일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포함해서 산업부가 그리고 또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김원이 간사님, 차관님 말씀이 우리 야당 위원들이 여당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 이 말씀입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성민 23대 국회에 가서 민주당이 야당이 되더라도 여당한테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우리가 혹시 야당이 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성민 감사드립니다. 아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 제22대 전반기 국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구자근 권향엽 김원이 김종민 김한규 박성민 박지혜 서일준

○청가 위원(2인)

박상웅 송재봉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차관 문신학

정책기획관 정상용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산업공급망정책관 송현주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박종섭

적합성정책국장 조용환

지식재산처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 박현희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

특허심사기획국장 양재석